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제3의 목소리

지난 2월 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원고측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34곳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는 '일부 인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시장이 저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저희 페이지 운영진은 현대 한국사회 문제점들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제국의 위안부>소송을 둘러싼 문제들을 생각하고 함께 해 왔던 그동안의 활동을 보다 구체화된 움직임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박유하교수 구하기의 의미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위기적 징후들을 고민하는 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20년 이상 이어진 한일갈등을 완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 결과적으로 현재 지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의 우애와 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일갈등은 좌우갈등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문제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 안의 분열에 대해 생각하고 넘어설 것을 지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의 갈등치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본을 아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아는 (한국거주) 일본인들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동아시아의 차세대에, 갈등이 아닌 우애를 물려주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4월 18일 토요일 15:00 (오후 3시) 장소 : 푸른역사아카데미

인사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 모임은, 작년 6월, 박유하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으로 고발당하는, 아마도 대한민국 출판 사상 초유의 사태를 심각히 여긴 이들이 페이스북상에서 만나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고발 직후 박유하 교수는 미국거주 김미영 교수의 제안에 따라 비난에 대한 방패역할에 스스로 나섰다던 몇몇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참여이유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맥에 따라 고민하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후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가지면서 2014년 가을에 페이스북 그룹<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생각하는 제3의 목소리>를 만들었고, 2015년 1월에 페이스북 페이지<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광장으로>를 만들어 필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면서도 유보해온 이유는, 이 사태가 상식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와 함께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책의 일부를 삭제 후 출판하라는 원고 측의 가처분 요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사태를 보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이 사태를 현대한국사회의 위기적 측면의 하나를 보여주는 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활동은 단순히 박유하 교수 구하기의 차원을 넘어선, 과거와 현대를 들여다보는 일을 통해 한국사회 바꾸기에 나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1주년을 의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한일양국시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현재 지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에 우애와 평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일갈등은 좌우갈등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문제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 안의 분열에 대해 생각하고 넘어설 것을 지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차세대에 갈등이 아닌 우애를 물려주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18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3의 목소리 드림

회의 진행 순서

1. 개회사 | 사회
2. 조직화 필요성 설명과 담당 결정 및 인사
3. 향후 여론대책 현황 설명 및 의견 청취
 - 1) 피디에프자료
 - 2) 책 발간
 - 3) 홈페이지
 - 4) 일본 쪽과의 연대 | 정보제공, 여론수렴, 자료번역, 홈페이지일본어버전 등
4. 발족 심포지엄 관련 경과 및 내용 설명
5. 재정문제—회비/지원응모/기부자/클라우드 펀딩 등
6. 향후 연대 방향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3의 목소리 조직화 방향 및 담당 결정

대표 | 약간명

이사 | 약간명

사무국 | 약간명

여론팀(사무팀 겸함,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고용)

연구/세미나팀

출판/자료팀

기술/제작팀

재정팀

번역팀

일본담당팀

법률자문팀(조직 밖 지원팀)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요약

위안부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전히 한일양국이 대립중인 이 문제는 일본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일인자’로 불리는 두 역사가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대립 중이다. 요시미 선생은 한국의 지원 단체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중심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이 대립은 곧 한일 간 대립이기도 하다.

이하는, 2013년 6월에 그 두 사람이 <하타 이쿠히코·요시미 요시아키, 일인자와 함께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논점>이라는 타이틀로 라디오에서 토론한 내용을 들으며 생각한 내용이다. 또한 그 무렵 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8월에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의 내용이기도 하다. 마지막에 이 두 학자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1. ‘위안부’란 누구인가?

근대 이후, 제국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가 세력 확장의 욕망을 개인적인 꿈과 교차시키면서 해외로 단신 이동하는 남성들은 적지 않았다. 그들의 이동을 지탱해 준 것은 근대적 정보수단과 교통발달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남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이동’도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일본에 들어온 외국 군인을 위해 그런 여성들이 제공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외로도 진출하게 되었다. 이른바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이 그들이다. 그녀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부모에 의해 팔려가면서도 ‘가족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여성들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그리고 국가의 이주 장려 정책에 따라 이주했던 남성들을 위해 조선으로도 이주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도 공창제가 생기고 조선인 여성도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 이미 러일전쟁 때부터 군인들을 ‘위안하는’ 여성들은 존재했고, 군대와 국가를 위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녀들은 ‘낭자군’이라 불렸다.

즉, ‘위안부’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세력 확장 정책에 따라 전쟁터·점령지·식민지가 된 지역으로 ‘이동’(당)한 여성들’을 칭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인이나 군인들이 이용한 ‘위안소’형태의 유곽들은 일찍부터 존재했다.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이름은 1930년대에 정착된 것 같지만, 그 기능이 본격화된 것은 근대 이후의, 서양을 포함한 제국주의시대이후로 보아야 한다.

2.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의 경우 먼 해외로 ‘국가를 위해’ 나가 있는 자국민성들을 위해 ‘위안부’를 필요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식민지가 된 탓에 ‘조선인 여성’이나 타이완 여성도 그 구조에 편입되게 된다. 1920년대에는 이미, 타이완이나 조선인 여성도,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나 ‘일본인이 된 조선인’을 위해 중국 땅으로 나가 있었다. 훗날의 ‘조선인 위안부’의 전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3. ‘카라유키상’의 ‘남자군’화

카라유키상 중에는, 팔려 와서 이른바 ‘매춘’시설에서 일하면서도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된 남성들을 위해, 자금이나 밀담장소를 내주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녀들이 ‘남자군’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고, 그런 식으로 멸시되면서도 위치가 ‘격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들 역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사후하고 향수를 달래 주는 일을 통해 나름의 공지를 발견하는 경우(물론 전쟁을 향해 치닫는 국가의 제국주의 담론에 속았다고 해야 한다)도 있었다. ‘위안부’ 역시 실제로 남자군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는 그와 같은 시대적구조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 다양한 ‘위안소’

따라서 일본군이 1930년대에 들어 갑자기 ‘위안부제도’를 발상해 내고 ‘<위안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까지 이미 존재했던 것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타국의 경우와 다른 것은 ‘애국심’이 그 동원구조에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만주국과 중일전쟁을 위한 주둔군을 위해 그 때까지 위생 등(일본본토에서 경찰이 관리했다)의 ‘관리’를 했던 매춘시설 중(요정이나, 이른바 카페 등이 그 역할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 기준을 충족시킨 곳을 ‘지정’해서 ‘군전용 위안소’로 삼았다. 그러다가 군대 수의 증가, 편의성 등을 생각하여 시스템화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업자에게 부탁해 위안부를 ‘모집’하기에 이르는데, 그 형태는 다양했다.

즉 오늘날 ‘위안소’로 간주된 곳 중에는 꼭 반드시 군부가 새롭게 만든 곳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일러일 전쟁 당시부터 존재한 기존시설도 포함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군이 점령한 지역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동이나 경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자’를 ‘군속’대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이 만든’ 위안소에 한한다. 따라서 ‘위안소’ 형태가 다양했던 만큼, ‘업자’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섬 등의 경우, 업자들 스스로 임시방편으로 허술한 위안소를 차려 영업(일종의 파견업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전쟁터의 경우 이동에 관해서는 군의 허가가 필요했으니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황을 군이 알고 총괄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교 등은 지정 위안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요정등을 위안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이 위안소를 만든(지정한) 이유는, 성병 방지나 스파이 방지 이외에도, 군인이 많아짐에 따라 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안소를 두고자 하는 편의성과 함께,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던 듯하다. 그 경우 군인들을 위한 요금은 ‘공공’이라고도 불렸다. 말하자면 국가(군)이 정한 일률요금이었다.

중요한 것은, ‘위안소’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는 점이고 훗날 위안부문제가 대두했을 때, 그에 따른 혼란이 생겼다는 점이다.

5. 다양한 ‘위안부’

따라서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일본이 전쟁을 했던 지역에 있었던 이른바 <성욕처리시설>을 전부 ‘위안소’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현지여성’이 많았던 매춘시설은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위안소’라 말하기는 어렵다. 즉, 그런 공간의 여성들은 단순히 성적 욕망의 배출구역할이 크고, ‘자국의 군인을 위안하고’ ‘향수를 달래준다’는 의미에서의 ‘낭자군’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즉 전쟁터에서 동원되어 강제 혹은 반강제로 일해야 했던 여성들이나, 전쟁터에서 일회성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이른바 ‘위안부’와는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꼭 같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성적 상대가 되었던 모든 여성을 ‘위안부’로 부를 수는 없다. 원래 기대되었던 ‘위안부’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은 ‘일본인여성’과, 식민지배결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 ‘타이완인’, ‘오키나와인’ 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매춘시설에 있었던 여성들도 ‘위안부’처럼 군을 대상으로 했던 성노동에 종사했고, ‘애국식당’ 같은 간판을 내걸고 군인을 받기도 했으므로(물론 지정업소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태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전쟁터(현지)에서 강간당하거나 강제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과, 일본인을 포함하는 ‘위안부’들의 군인과의 관계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위안부’란, 이와 같이 국적이나 시기, 그리고 장소(최전선인지 후방인지)에 따라 그 체험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똑같이 ‘위안부’로 생각하고 위안부문제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에서 커다란 혼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경우건, 성적 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고, 그런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6. ‘강제연행’에 대하여

따라서 위안부가 된 경위도, 당연하지만 같지 않다. 그 중에는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현지에 있었던 여성도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윤정옥 교수는, 자신이 경험했던 ‘정신대’를 ‘위안부’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경험한 ‘정신대’는 ‘학교’에서 ‘도장’을 찍고 응하는 형태였으므로 그녀는

그 모집을 ‘강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대’ 모집은 ‘학교’ 단위의 ‘국민동원령’에 근거한 것이었고(실제로는 시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형태를 취했다)그 대상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위안부’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위안부가 ‘군인이 강제연행’했다고 인식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은 이 착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 시대에 이미 ‘정신대로 가면 위안부가 된다’는 풍문이 존재했다. ‘위안부’에 계도 ‘정신挺身’(몸을 바쳐) ‘군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주입되었고, 실제로 간호, 세탁, 묘지 돌보기 등의 일에 동원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오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군인’이 끌고 갔다고 증언하는 위안부의 비율은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권의 증언집에 한해 말한다면 오히려 적다. 그 경우에도 ‘군속’ 취급을 받았던 업자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업자 자신이, 모집하기 쉽도록, 당시 시작되었던 국민동원으로서의 ‘정신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짝을 지어 나타난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아무튼, 위안부 증언집에서는, ‘공장’으로 간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데리고 갔다는 증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의미에서는 ‘군인에게 끌려갔다’는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은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즉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이 조직적으로(입안과 일관된 지시체계를 통하여) 속임수를 써서라도 강제동원을 지시했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네덜란드나 중국의 경우, 군이 직접 모집하거나 격리시켜 성 노동에 종사시켰다. 따라서 ‘강제성’이 더 강하다. 다만 그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안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조선-타이완인이 ‘일본제국 내의 여성’으로서 군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들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는 ‘정복한 ‘적의 여자’에 대한 ‘계속적 강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군과의 ‘관계의 차이’가 완전히 무시되고 같은 ‘피해자’로서만 이해되었던 것은, ‘강제연행’이나 ‘위안부’에 대한 이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을 심화시켰다.

크게 나눈다면, 문제발생 이후 ‘위안부’로 여겨져 온 사람들 중에는, 원래의 의미에서의 ‘위안부’(이 것은 정신대보다 느슨한 ‘국민동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민간운영 시설(점령지나 전쟁지역에 일찍부터 존재했던 장소를 포함한다)을 군이 ‘지정’하여 위생 등을 ‘관리’하던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잡혀 계속적 강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의 여자’, 세 종류의 여성들이 섞여 있다.

군속 대우를 받고, ‘군복’과 같은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업자’가 모집한 조선의 경우(일본인도 있었다),업자가 ‘정신대’(강제적, 그러나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국민동원. 그러나 ‘지원’의 형태가 된다)에 간다고 속였기 때문에 ‘강제연행’이었다고 당사자들이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

7.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는 장소에 따라서는 기모노를 입고 일본이름을 쓰며 일했다. 즉 ‘일본인’ 여성을 대체하는 존재였다. 위안부들에게는 요금의 구별이 있어서 ‘일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조선인이었다. 정말은 말려들지 않아도 되었을 (일본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애국’에 조선인도 동원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낳은 존재이고, 그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 발생한다. 위안소에 가는 과정에서 장교나 군의관등에 의한 강간도 많았던 것 같고, 군부대 이동 중에도 조선인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강간당하기 쉬웠다.

한편,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모집된 ‘군위안소’의 경우 구도적으로는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의 관계에 있었다. 병사가 폭행하지 않도록 상관이 감시하고, 업자의 착취가 없도록 군이 관리하기도 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지만, 위안부가 압도적 다수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혹한 체험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병사나 업자의 횡포로부터 위안부들을 보호하는 규범도 만들어져 있었다. 물론 그 규범이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병사들은 곧잘 조선인 위안부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주의만 받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듯하다.

조선인 위안부는 이와 같이 총체적인 민족차별구도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인 위안소와 일본 군인이 연애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는 일은 식민지화의 정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관계를 보는 일이 중주국·식민지간의 차별이나 착취구도를 무화시키는 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태를 정확히 보는 일이 오히려 더 정확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 위안부의 일부는 최전선에서도 행동을 함께 하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병사의 끝없는 욕망을 달래는 대상이 되었으며, 총격이나 폭탄의 희생이 되는 가혹한 체험을 했다. 말하자면 설령 계약을 거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조선의 여성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한 것은 ‘식민지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전쟁’ 책임 이전에 ‘식민지 지배’ 책임으로서 묻어줘야 한다.

8. 업자

군이 필요로 하여 모집한 것은 분명하지만, 납치나 거짓을 군이 공식적으로 허가했다는 증언이나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며 강제적으로 데려가거나 병이 났을 때까지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 혹은 조선인 ‘업자’였다. 일본인 업자 쪽이 규모가 크고 조선인 업자 쪽이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들의 다수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폐업이 불가능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이러한 업자들의 착취구조에 있다.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에게 ‘거주’ ‘폐업’ 등의 자유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업자’에 의한 구속과 전쟁터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구속이었다. ‘군인’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것과 같은 구조이다. 위안부들의 신체에 남아 있는 흉터도, 업자에 의해 가해진 경우가 많다. 군이 폭행하는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다.

9. 20만의 소녀

‘20만’이라는 숫자는 한일을 합쳐 ‘국민동원’된 ‘정신대’ 숫자였다는 사실이 1970년 경 한국 신문기사를 보면 나온다. 이 신문은 일본인 여성이 15만, 조선인이 5—6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결과로 이후 20만이라는 숫자가 전부 ‘위안부’의 수라고 이해된 듯하다. 더구나 그 ‘위안부’ 모두가 반드시 ‘군이 만든’ ‘군위안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위안부가 된 사람 중에는 ‘소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60년대 한국영화를 보면 조선인 학도병들이 만난 위안부가 성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증언을 보면 십대 전반인 케이스는 오히려 적고, 당시 군인들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는 증언자의 다수가,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연상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매춘 업계에 소녀가 끌려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녀가 많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본군의 뜻이었다기보다 업자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의 나이는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증언집이나 자료에 따르면, 평균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보인다.

10. 패전 후의 귀환

위안부가 패전 후에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터에서 폭격으로 희생 된 경우나 집단자살에 휘말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들은 이른바 다른 일본인/조선인귀환자들의 수난을 똑같이 경험했고, 장소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일 자체가 어려워 그 길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는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패전 후에 ‘버리고 떠난’ 데 대한 원망은 일본군보다 ‘업자’를 향한 경우가 많다. 군과 행동을 함께했던 경우, 패배하는 전투의 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그 상황은 여러 가지였으며 군이 귀국을 도운 경우도 있었다.

11. 1990년대의 사죄와 보상

1990년대에 일본이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나선 사람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고자 만든 ‘아시아 여성기금’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국회입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각료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진행했던 의원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 국가 간 배상이 끝났음과 ‘강제연행’의 유무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법안을 통과하는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기금’은 ‘국회’를 가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각료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죄와 보상’이다. ‘국회입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책임회피’수단이라고 간주하고 비난했지만, 기금은, 1965년의 국가 간 조약에서 개인보상은 끝났으므로 국가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의적 책임’은 지고자 한, 말하자면 ‘책임을 지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민의 모금으로 이루어졌지만, 300만 엔 상당의 의료복지보조비도 지원되었고 위안부들에게 건네진 보상금의 반 이상은 실제로는 국고에서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사업비 89퍼센트가 국고금으로 조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금’은 단순한 ‘국민기금’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합쳐 행한 ‘사죄와 보상’의 시도였다. 물론 이때, 일본 정부가 기금을 주도했음을 명확히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2. 1965년의 과거청산에 대하여

1965년의 한일조약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사후처리를 위한 조약이었다.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청산에 관한 조약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약 글귀에 한 마디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말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로 징용 등에 관한 ‘보상’도, 중일전쟁 후에 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의 전쟁 상대국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싸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보상은 군인연금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른바 ‘일본국민’으로서의 것이었다. 돌연 양국이 갈라졌기 때문에 저금등 그 밖의 채권 등을 포함한, 금전적 사후처리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의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반도 유일의 ‘국가’로서의 한국이 대신 받겠다는 명목으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 즉 ‘한국’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 배경에는 엄혹했던 냉전시대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적 경위가 있다.

당초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에 대해(인명손실 등) 청구하려고 했다. 최종적으로 그 요구가 삭제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식민지 지배는 합법’, 즉 한국의 의지로 행한 일이라는 식의 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당시에는 다른 구 제국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죄한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시대의 한계였다. 즉, 1965년의 조약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냉전 하에서 구 제국들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죄한다는 발상을 할 만한 시대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측도 냉전시대 영향으로 스스로 ‘과거청산’을 서둘러 버렸던 탓이기도 했다.

13. 1910년 병합조약에 대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 1910년 병합조약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고 ‘불법’이었다고 하는 논의도 있다. 그리고 이때의 조약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설령 소수가 이끄는 일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조약'이라는 (당시의) '법적 절차'를 통한 것이었던 이상,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옳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다.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 등 역시 식민지를 가졌던 대국의 승인을 얻어 했던 일이고, 그들만의 '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라면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이 '합병'을 승인한 문서가 존재하는 한, 안타깝지만 그것을 제도법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부분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도, 알려졌던 것도 아닌 '병합'은, '대부분의 조선인'의 이해와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승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대표가 그렇게 해 버린 이상, 법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시대적 한계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인정한다면(90년대 일본의 사죄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설령 법적인 '불법'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과 상관없이, 일본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14. '법'의 문제

한국정부가 지원단체가 추구했던 것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사용에 관한 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다(일본의 지원자 다수도 입장이 같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에서 '성매매/매수'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상, 위안소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령 국제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성폭력조차 아직 '법'으로 처벌되지 않던 시대였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죄의식 같은 것을 갖지 않고 강간을 반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당시에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문제는 그 인신매매를 일본군이 지시했는가 여부이다. 실제로 인신매매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일본군은 사기나 유괴에 의해 끌려온 경우 돌려보내거나 다른 취직자리를 알선하도록 업자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군이 사기나 유괴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허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본이 종주국으로서 식민지 여성을 차별과 강간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15. 또 다시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하여

그런 의미에서는 90년대의 '도의적 책임'은 명확히 의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부분을 인식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조선인 위안부가 '식민지 지배'에 의한 존재라는 것도 인식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탈리아나 영국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사죄를 했던 일이 있다. 일본도 호소카와 수상이나 무라이마 수상이 사죄를 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문제였음이 의식되었는데, 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대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로 다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 문제가 식민지 지배의 결과라는 인식은 사라져버렸다.

현재 이 문제에서 다른 나라 지역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아들여 일단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국교정상화 때 모든 배상을 포기했다. 현재 위안부 문제를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중인 것은 ‘한국인 위안부’뿐이므로, 이를 ‘한일문제’로서 재조명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나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생각하는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방식만으로는 조선인 위안부의 특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가부장제 안의 희생자로 다룰 때, 진정한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다시금 마주하는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일본인들로서는 다른 나라도 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 제국’을 향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문제로서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미국도 영국도 네덜란드도 이 문제를 ‘자국’의 문제로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국가의 욕망을 위해서도 자국과 타국의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식해야 한다.

16. ‘성노예’에 대하여

조선인 위안부들은 ‘준군인’과 같은 역할도 해야 했다. 그녀들의 경우가 비참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감시하고, 강제에 가까운 노동을 시켰던 주체는 군뿐 아니라 업자이기도 했다. 자유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녀들의 ‘노예성’은, 우선은 ‘주인’이라 불리는 업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그녀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목숨조차도(전쟁터, 병, 과로) 저당 잡혔다는 의미에서는 ‘국가의 노예’이기도 했다. 이동의 자유도 폐업의 자유도 그리고 목숨을 지킬 자유도 없다는 의미에서 군인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인군인에게는 적으나마 일정한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없었던 것은 근대국가 시스템이 남성 중심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17. 고노 담화

고노담화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위안부가 된 것을 인정한 것이고 물리적인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연행했던 과정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과 위안소에서 성노동이 그녀들의 선택이 아니었던 점을 말하면서, 물리적이 아닌 구조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의 경우, 설령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한 내용이기도 했다. 고노담화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측이나 지키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다 이 담화가 ‘물리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아무튼 이 담화는 책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18. 해결을 둘러싼 갈등

일본정부가 만든 '기금'이 '민간의 것'이라고만 인식되었던 것은, 우선은 마스크 등의 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보상이 1965년 조약에 저촉되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한 일본정부가 기금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만 간주하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서 일본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지원자들 중 일부는 국회입법을 '일본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위안부상과 '강제연행'을 둘러싼 이해에 있어서 반대파와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당한 이상으로 일본정부를 비난하고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세계에 확산시켜 결국, 위안부 문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이들은 천황을 범죄자로 판결하는 국제재판도 열었지만, 이것이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운동'으로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운동이란 널리 '일본국민의 합의'를 얻는 쪽으로 가야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협한류'로 시작된 헤이트스피치의 근저에는 실은 이 무렵부터 시작된 한국/좌파혐오가 있다.

19. 세계의 의견

운동가들은 이처럼 일본정부를 설득하기보다도 세계에 호소하여 일본을 압박하려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Coomaraswamy 보고서를 시작으로 여러 유엔 보고서의 대부분은 '20만의 소녀가 강제적으로 끌려 가 성노예로 일했고 패전 후에 거의 학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결의도 그들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세계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올바르지 않다.

유엔에서는 네덜란드 여성도 증언을 했고 네덜란드의 케이스는 분명히 '레이프 센터'라는 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여성은 조선인이나 일본인 위안부와는 그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네덜란드 여성이 피해를 받은 것은 그녀들이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사아를 식민지화했던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구가 일본만을 비난하는 것도 모순적인 일이다.

20. 제국과 위안부

한국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비롯하여 미군이 기지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머나먼 땅에 보내진 병사들을 '위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있다. 즉, 전후 직후의 일본이나 한국전쟁에서의 조선전쟁 당시나 그 후의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군대'는 지금도 '위안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와는 달리, '국가를 위해'라는 의식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평화 시(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한)인지 전시인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들 ‘기지’는 일찍이 전쟁이나 냉전 때문에 만들어져 그 상태를 계속 이어왔다. 그리고 실은 미국이야말로 일본이나 한국에 위안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역시 그 상황을 묵인중이다.

일찍이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세력범위를 넓혀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도 특정국가의 세계 장악 세력은 존재한다.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를 계속 내놓은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약자를 위해 싸워왔을 터인 진보세력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한일 간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의 군사화나 보수화를 진행시킨 측면이 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인 듯 보이면서 실은 북한을 의식했던 군비증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냉전적 사고를 넘어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은 대립 중인 사람들이 논의하고 접점을 찾도록 한일협의회를 정부주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전제로, 지원단체 외에 위안부 본인(가족)이나 제3의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다. 기존 연구자나 운동가들만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이십 수년의 세월이 그것을 증명한다. 국장급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밀실 논의가 아니라 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하고, 이미 이 많이 알게 된 양국 국민들이 같이 생각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언급한 일본의 ‘국회결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결의의 의미는

1. 1990년대의 기금의 마음을 다른 형태로 재시도, 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
 2. 서구의 결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연후에 비판적 응답
 3. ‘전후일본’이라는 이제까지의 전후일본인식을 ‘제국 후 일본’으로 고쳐 갖는다.
- 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일이 함께 그런 논의에 나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때, 한일은 비로소 과거청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타·요시미 논의에 관한 의견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의견에 대한 생각

- 1) 그는 위안부를 단순히 매춘부로만 본다. — 애국한 존재, 특히 군이 운영했던 경우는 ‘준군인’적

존재이기도 했음이 간과되고 있다. 설령 매춘부라고 해도 비참함은 다르지 않다.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즐거웠다고 한다면, 그건 그녀들이 '군을 위해 일하는 존재였기 때문'이고 강요된 자긍심의 결과였다. 그는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2) 업자에 조선인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인도 있었고 규모의 크기는 일본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3) 그저 조선인의 책임이라고만 말하고 수요를 만든 일본국가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4) 업자에게 군속의 지위가 주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5) 군이 계약서소지여부를 체크했던 것은 속아서 온 여성이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계약서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랬다면 위안부이용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된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6) 운동이 정치활동이 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참가자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순수한 선의로 활동했다고 봐야 한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의견에 대하여**

1) '강제연행'을, 구조적인 강제성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만, 군인이 데리고 갔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그 차이는 정확히 말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2) 성노예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유를 구속했던 것은 업자이며 국가다. 이른바 매춘부에게도 노예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3) 세계가 위안부 문제로 한국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해서, 꼭 그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 위안부의 생활고는 인플레보다는 업자의 착취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5) 네덜란드와의 관계에 있어 조선이나 일본인위안부와의 차이를 간과.

6) 업자 중에는 순수한 민간업자도 존재한다. 모두가 군속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위안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운영한 위안소에 관해서만 말한다.

7) 책임—인신매매 주체는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책임은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지시하고 도왔던(배를 사용한 것만으로 인신매매를 도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 것과, 알고도 묵인한 것과, 모르고 이용한 것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책임추궁을 하기는 어렵다.

8) 구조적 강제성 속에 있는 자발성을 간과하고 있다. 인신매매이니 성노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위안부의 '주인'은 우선 업자였다.

결론—양쪽 다 위안부의 일면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한 접점은 찾아지지 않는다.

• '피해'인지 아닌지 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식민지'는 그 양쪽을 갖는 존재였다. 종속적 가해와 협력부분을 보는 일이 일본의 책임을 희석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모두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제국) 욕망에 동원된 사람들의 불행을 누가 생각하고,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병사도 그 중 하나. 위안부도 거기에 가담했던 민간의 책임(업자)도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체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하나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상황을 ‘모순’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위안부는 ‘매춘부’도 무구한 ‘소녀’의 면도 함께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모순이야말로 ‘식민지의 모순’이었다. 위안부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자에게 부담시켜왔다는 점에서 계급문제이며, 가부장제, 그리고 성마저 전쟁에 이용해온 국가의 문제이다. 그 배경에는 빈곤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회시대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의 ‘주인’일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부정해온 사람들도, 지원해온 사람들도 ‘매춘’차별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 양측의 생각이 적대적 공범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해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내놓은 정보와 감정에 휩쓸려 대립/반목해 온 것이 이 몇 년의 상황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배경을 알고, 위안부문제를 지배와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는 일로 생각하고 해결에 나서는 일이다.

《제국의 위안부》 소송 사태 관련 일지

2013/812 _ 《제국의 위안부》 초판 1쇄 발행

2014/6/16 _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9인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책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도했다는 나눔의 집 측의 보도 자료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기사들로 대중적인
분노가 터져 나옴.

6/19 _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세종대 방문, '파면하라'고 시위.

6/20 _ SBS 라디오 전화인터뷰. 그 밖의 여러 매체 인터뷰.

6/22 _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박유하 교수를 "일제의 창녀"라고 한 트윗을 리트윗.

6/25 _ 1차 대책모임(홍대앞)

7/2 _ 김관기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자청하여 변호인 선임.

7/3 _ 김철/박삼현 교수 주도로 탄원서 작성 및 서명 작업.

7/4 _ 나눔의집 세종대에서 2차 시위.

7/9 _ 서울동부지법에서 가처분신청 첫 심리.

7/11 _ 페이스북 여론대응팀 발족.

7/17 _ 2차 대책모임(올림픽거리)

7/22 _ 한국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원고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화해를 위해서』 공격.
이에 따라 문체부, 『화해를 위해서』 우수교양도서 선정(2006년) 경위 검토를 발표.

8/26 _ 3차 대책모임(홍대앞)

9/19 _ 아사히신문출판, 고소 사태 이후 보류되었던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출간 결정.

10/21 _ 원고 측, 가처분신청 취지 변경. 109곳을 53곳으로 줄이고 '허위'라던 주장을 '전쟁 미화',
'공공선에 반한'이라며 역사인식 문제로 바꿈.

10/22 _ 가처분신청 두 번째 심리.

11/4 _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 네 곳을 상대로 반론/정정보도 요청.

11/7 _ 일본어판 《제국의 위안부》 발간.

11/8 _ 대책모임, 첫 번째 공개모임 개최

11/26 _ 가처분신청 세 번째 심리로 심리 종결.

11/29 _ 대책모임, 두 번째 공개모임 개최. 모임의 성격을 박유하 교수를 위한 지원 '기금'을

넘어서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제3의 목소리'라는 평화운동단체로 규정함.

11/30 _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해당 기사를 삭제 혹은 수정하고, 조선일보(디지털조선)는 반론보도문 게재.

12/12 _일본어판 《제국의 위안부》, 아마존재판에서 역사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름.

12/16 _일본어판 《제국의 위안부》가 지식인들에게 '2014년의 수확'(《주간독서인》), '2014년 나의 세권', <도쿄신문> 등으로 선정되고, 지식인과 언론의 호평이 이어짐.

12/17 _서울동부지검 조사/수사 시작. 2014년4월14일 현재, 도합 5회 조사.

12/26 _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의 권고에 응함. 12/30에 반론보도 게재

2015/1/31 _ 《제국의 위안부》를 테마로 토론회 개최(푸른역사아카데미).

2/15 _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 직후의 왜곡 기사를 링크, SNS에서 공격 시작,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동참. 그러나 대책모임 이외 여러 지식인/시민들이 옹호에 나섬.

2/17 _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하여, 원고 측에서 지목한 53곳 중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

3/6 _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내기로 결정.

3/7 _대책모임(올림픽커피)

3/30 _김용찬 변호사 선임.

4/18 _'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제3의 목소리' 발족모임 개최.

소위 ‘범죄일람표’

제국의 위안부의 표현 중 명예훼손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탤릭체는 재판부 인용)

번호	목차	쪽수	범죄사실	이유	해명
1	제 1 부— 제 1 장— 1.	19쪽 8줄	<p>센다는 ‘위안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p> <p>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낸 것이었다.</p>	<p>채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성노예 생활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애국을 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p> <p>그러므로 당연히 채무자의 시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애국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빌 이유가 없는 것이며 희생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에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p> <p>조선인 ‘위안부’를 일본 출신 위안부 처럼 일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애국하는 존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희생과 애국은 자발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강제나 기망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들을 자신을 희생해 애국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p> <p>이는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한 피해자임을 외면한 주장입니다.</p> <p>그럼에도 채무자 박유히는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센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애국한 존재라고 표현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보상의 정당성을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인 위안부의 본질을 왜곡하면서까지</p>	<p>사실—자료2—4쪽(이하 기재출한 자료인 경우 쪽수만 표기) 채권자 측은 근본적인 오해 및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9월3일의 답변서에서도 설명했듯 이 책에서 <애국>이라 말한 것은 <애국>을 당했다고 말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구조 속으로 몰아넣은 식민 지배구조를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애국을 위한 동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조선인 일본군들 역시 마찬가지고,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있었으니 책임과 보상을 하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희생과 애국은 자발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강제나 기망>의 주체는 직접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닙니다. 위안소를 만들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나 기망>의 주체는 업자들이었고 그렇다는 사실이 파악될 경우, 일본군은 끌려온 이들을 되돌려 보내거나(본문76쪽) 다른 곳에 취직시키기도 했습니다.(한구위안소—추가제출)</p> <p>당시의 조선 여성들은 일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인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본문61쪽).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함께 수류탄을 나르기도 했습니다(본문58쪽). 표면적인 구조가 <일본인>으로서 참여해야 했던 이상, 그건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애국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정황을 그동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말했듯 위안부들이 처한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수 있고 그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본서에서 위안부들의 명예를</p>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훼손하기는커녕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냄으로써 일본인들의 반성적 자각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위안부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애국>이라는 시대적 프레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본서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도 9월 3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강요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2	제 1부 — 제 1장 — 2.	31쪽 19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u>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갈 힘이 되었을 수 있다.</u>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을 위해 애국했던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존재라고 전제할 후, '위안부'로서의 역할이 삶의 긍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원하지 않은 성노예 생활을 하며 비참하게 생활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성노예 생활을 삶의 긍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왜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11—12 이 부분은 <u>일본인 위안부에 관한 서술</u> 입니다. 따라서 문제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의 다른 부분—일본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채무자는 위안부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3	제 1부 — 제 1장 — 2.	32쪽 3줄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채무자 박유하는 가라유키상들이 해외 진출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팔아 돈을 벌고 이를 통하여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서 담당할 수도 있었다고 기술한 후 위 가라유키상의 후예가 바로 "위안부"의 본질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들 역시 가라유키상의 후예로 일본군을 상대로 성을 팔아 돈을 벌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담당할 수도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했던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를 심각히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u>주장—11—12, 67—69, 71—73, 75</u> <가라유키상의 후예를 위안부>로 보는 것은 저의 학문적 판단입니다.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안에 많은 근거자료를 기술하였습니다. 위안부의 기본구조가 관리매춘임은 <u>위안부들 자신의 증언에 나오는 사실</u> 입니다.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시킨 것도 구조적으로는 일본군이나 직접적으로는 업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술한 것이 <위안부의 처지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제 1부 — 제 1장 — 2.	33쪽 7줄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u>'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u>	의사에 반해 성착취를 당했던 조선인 위안부를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을 팔았던 일본인 창기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u>주장—14—16</u> <의사에 반해 성 착취를 당했던 조선인 위안부>라는 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에 반하>도록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업자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일본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는커녕 그러한 협력

		<p><u>통과 기본적 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u>을 먼저 알 필요 가 있다.</p> <p>중략</p> <p>그리고 ‘조선 인 위안부’라 는 존재가 생기 게 된 것은 이 들의 위치를 조 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 다.</p>	<p>채무자는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조 직적으로 성노예로 동원된 조선인 위 안부를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창 기가 된 일본 여성과 동일시 하고 있어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를 심하게 왜곡 하고 있습니다.</p> <p>조선인 위안부들은 강제나 기망에 의 하여 위안소에 끌려가 강제 성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는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소 설 치와 동원에 의한 것이지 가난과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 때문에 일본인 창기를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p> <p>일본은 자국 여인들에 대한 대규모 조달이 불가능하여 식민지 조선여인 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입니다.</p>	<p>체계를 만든 식민지배구조를 비판하는 일이 본서의 목적입니다.</p> <p><일본인 창기>와 그 고통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은(물론 조선위안부와 일본 인위안부간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본 서에 기술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일본인위안부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를 여성문제라 하면서도 매춘에 대한 차별의식과 <일본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겪어야 했 던 고통은 도외시하려는 채권자들의 의 식을 드러냅니다. 설사 창기출신이라 하 더라도 가부장제와 국가주의가 성적 착 취의 대상으로 동원한 가난한 여성들의 고난은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기본적 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곧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이야 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가난과 남성 우월적 가부장제>가 아니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저의 학문적 견지에 서 본 시각일 뿐 찬성하지않는다 하여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서에 쓴 것처럼 강제의 직접적 주체는 업자나 유괴범들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가부장제>가 위안부의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은 2005년 본인이 지적한 이후, 다른 연구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국 여인들에 대한 대규모 조달이 불가 능하여 식민지 조선 여인들을 동원했다> 는 지적은, 바로 그러한 동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라는 인식이 부재 하는 지적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상,저의 학문적판단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이유 는 없습니다.</p> <p>일본인 위안부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조선인 위안부는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었지만 양쪽 다 전쟁터에서 군인 들과 함께 쫓겨 다니다 폭격을 당한 경우 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아니라 이른바 옥쇄를 하는 경우 일본군과 함께 죽는 건 일본인 위안부였습니다. 채권자 의 해석은 전후 문맥이나 근거자료를 생 략한, 자의적인 지적입니다.</p>
5	38쪽 4줄	<p>그에 따라 업자 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 겠지만, <u>일반 적인 ‘위안부’ 의 대다수는</u></p>	<p>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위안부를 모 집한 경우도 있지만 위안부의 대다수 는 <u>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던 가라유키 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u>라고 기술 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성을 판 가라유</p>	<p>주장—18—19 <가라유키는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다> 면서 위안부와 가라유키 사이에 차이를 보려 하는 지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 부의 상황이 임노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지적입니다. 채무자는 <위</p>

		<p><u>‘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u>로 보아야 한다.</p>	<p>키상과 같은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대다수라고 표현할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의사에 반해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에 이용된 조선인 위안부를 자발적인 성판매자인 가라유키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p> <p>채권자들은 강제나 기망에 의하여 끌려가 강간을 당한 후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지 결코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을 가라유키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왜곡하는 허위 사실입니다.</p>	<p>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사실을 정확히 보되 그런 사실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하게 보는 일을 통해 일본을 비판/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p> <p>이 부분의 강조점은 가라유키와 위안부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동원된 존재라는 점입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다중의 독자(한국, 일본, 지원자, 부정자, 일본 정부 등)를 상대로 각각에 필요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p> <p><강간 후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위안부문제의 한 측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본서에 다수 인용한 기존의 증언집이 보여줍니다.</p>
6	38쪽 18줄	<p>그러나 <u>‘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p> <p>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p>	<p>조선인 위안부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의 성적욕구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었고 그 동원은 일본군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용인되었습니다. 위안부 동원 담당의 최상층에는 당연히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p> <p>이처럼 일본군의 요구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위안부가 강제 혹은 기망, 유괴 등에 의하여 동원되었음에도 마치 일본군은 위안부 조달의 강제성에 잘못이 없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는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만을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기를 통한 기망과 유혹 등 진정한 의사에 반한 동원 역시 강제연행이라고 할 것입니다.</p> <p>채무자의 주장처럼 일본군의 강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위안소에 속아서 끌려간 조선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위안소에서 퇴거를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를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들은 위안소에 가는 과정이나 위안소에서 강간을 당합니다.</p> <p>식민시대 조선은 현역 일본 육해군대장이 조선총독을 담당하였고 총독은</p>	<p>사실-21</p> <p><조달의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것이 <구조적 강제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달의 강제성에 잘못이 없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기술은 본서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거나 제대로 된 독해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본문 27쪽)일본군에 의한 강간이 있었다는 것도 본서에서 충분히 기술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성만을 강제성이라고 할지 여부는 학문적판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인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위안소에서 퇴거 가능>했습니다.(관리인 일기 227쪽) 불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일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자에게 빚을 많이 진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연행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안부 모집은 신문지상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본문 25-26쪽)</p> <p>채권자들은 전쟁터에서의 강간과 같은 상황이 식민지에서의 위안부 모집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합니다. 또한 한국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본서는 그런 부분을 문제시하고 검증한 책입니다.</p>

			<p>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군까지 통수한 것에 비추어 당시 조선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통치를 받았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p> <p>그러므로 조선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위안부 동원과 이후 위안소 유지는 당연히 일본군의 책임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p> <p>그럼에도 채무자는 일본군이 공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 일본군의 공적 책임 인정을 증언하는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7	제 1 부 — 제 2 장 — 1.	57쪽 6줄	<p>‘주둔부대의 일원’이자 ‘부인같은 느낌’이었다는 위안부들. 사실은 이것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요구된 역할이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에 투입되어,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을 여성이 집에서 일하며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보조작업을 하도록 동원된 것이 위안부였다.</p> <p>그런 의미에서도 <u>전쟁터에서의 강간의 대상이 된 ‘적의 여자’와 위안부는 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u></p>	<p>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와의 성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지 조선인 위안부에게 부인과 같은 역할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일본 군인 일부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시각이지 이를 피해자인 위안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사실도 아닙니다.</p> <p>전쟁터에 끌려가 원하지 않은 상대들과 하루에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씩 성행위를 강요당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역할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않는 일부 일본군의 시각인 “부인같은 느낌”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p> <p>일본군은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위안부들을 이용했던 것이고 조선인 위안부들은 그 피해자입니다.</p> <p>일본군은 전투를 진행하는 현지에서는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강간을 하였고 조선에서 끌고 간 위안부들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강간을 위한 폭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실제적인 강간행위를 꾸준히 반복하였던 것입니다.</p> <p>그러므로 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p>	<p>사실—25</p> <p><부인>을 단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위안부와 연애하고 결혼한 일본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위안부를 <부인>에 비유한 것은 성적 대상으로서이건, 사랑의 대상으로서이건 거짓일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강간>만이 <피해자>의 요건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부부간 강간>도 성립하는 만큼, <부인>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p> <p>위안부는 처음에는 성욕을 풀기 위한 장소로 마련되었지만, 점차 심신의 안정효과를 노리게 되었습니다.(요시미 요시아키, <총군위안부 자료집>, 205쪽)</p> <p>그러한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본서에 제시한 증언과 자료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인들이 전투에서의 압박감을 풀고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p> <p>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야기를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하는 장면은 적지와 식민지의 위치차이를 보여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 함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이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p>

			<p>로 다른 존재였다. ...중략...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휴일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p>	<p>이나 조선인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동일한 피해자인데 채무자 박유하는 같은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단정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p>	
8	제 1부—제 2장—1.	58쪽 3줄	<p>조선인 위안부가 한 일은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었다. <u>그들은 간혹도 봉대감기도 배웠고 심지어는 총쏘기(총조립?)까지 배워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u></p> <p>전쟁에 나갔다 오면 기모노에 에프론 차림으로 맞아들이고 축하연에 참석하는 존재이기도 했다.</p>	<p>조선인 위안부가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듯이 그들이 총쏘기를 배웠다면 이 역시 일본군에 의한 강제 교육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 <p>그런데 채무자 박유하는 마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봉대감기와 총쏘기를 배운 것처럼 서술하고 심지어는 <u>군인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u>고까지 기술하여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들을 전범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는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박유하가 밝히는 실상은 위안부 문제의 지역적인 부분으로 위안부의 실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p> <p>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것도, 총쏘기를 배웠다면 배운 것도 위안부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지탱한 것처럼 기술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사실—28—29</p> <p>당연히 강제교육입니다. 이야 말로 <구조적 강제>입니다. 일본은 <식민지>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 그러한 일을 강요했습니다. 본인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을 기술했을 뿐, 이에 대해 <자발적>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탱>했다 함은 결과적/구조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이 조선인까지 포로로 잡아 두거나 본서에 쓴 것처럼 일본인 전범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위안부가 있는 것은 그러한 구조의 결과입니다.</p> <p><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것도, 총쏘기를 배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구조를 문제시 했을 뿐 <위안부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곡해는 채권자(대리인)의 독해력의 문제로 판단합니다.</p>
9	제 1부—제 2장—1.	61쪽 18줄	<p>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p>	<p>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채권자 개인의 경험과는 너무 동떨어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p> <p>더불어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 운운하면서 위안부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억측을 하여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위안부</p>	<p>사실—27—29</p> <p>채무자는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라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명확히 쓴 바 있습니다. (본문 61쪽) <일본군 위안부들이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긍지를 느꼈다>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인식일 뿐입니다</p>

			<p>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u>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공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u>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p>	<p>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위안부들이 과연 일본군의 승전을 지원하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성을 제공하고 일본군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지까지 느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위안부들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p>	<p>다. 그러한 인식은 위안부들 자신이 <공지>를 말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러한 <u>공지가 요구되었다</u>는 것입니다. 채무지는 이 글에서 <다소 무리한 공지>, <국가 멋대로 부과>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공지가 외부에서 강요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p>
10	제 1부—제 2장—1.	62쪽 12줄	<p>“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p> <p>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u></p>	<p>일본인 위안부가 자기 조국의 승전을 지원하면서 기뻐하면서 위안부 일을 하였다고 하며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인 위안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동일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p> <p>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는 서로 처한 입장과 출발점이 전혀 다름에도 기본적인 입장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고</p> <p>마치 조선인 위안부들도 일본인 위안부들처럼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안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사실/주장—31—32</p> <p>9월3일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여성들이 '애국'의 기치 아래 헌신을 요구당했고, 그에 응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표시된 부분에서 위안부가 <국방부인회에 가입해 띠를 두를 수 있었던 것이 기뻐다>고 말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던 이들에게 당당한 <국민>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p> <p><국방부인회>란 1932년—1942년 사이에 존재한 일본의 단체입니다. 출정군인을 위해 전송을 나가거나 위문주머니를 만들거나 하면서 <후방 국민으로서 전쟁을 돕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국방은 부역에서부터>라는 표어를 만들어 여성의 전쟁지원이 요구되어 이들은 일본식 앞치마를 두르고 전쟁 수행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안부들의 사진 중에는 이 국방부인회의 띠를 두른 사진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했듯 본서는 그러한 역할을 요구했던 일본을 문제시한 책입니다.</p> <p>9월3일에 제출한 답변서중 두번째 이미지의 글에 “기생이나 창녀와 달리 군인 위안을 위해 동원된 애국봉사단”으로 자신들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자료 : <여자의 병기>또한 <위안부는 군인을 돌보는 존재였다>고 저자에게 말한 위안부 할머니도 계십니다.</p>

			<u>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u>		
11	제 1부—제 2장—1.	65쪽 11줄	<p>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 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u>.</p> <p>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u>“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짝들 수 없었다.</u></p>	<p>조선인 위안부들이 자신의 역할을 일본군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로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런 역할이었다고 단정하고</p> <p>극히 예외적인 일부 상황을 조선인 위안부들과 일본군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파생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p> <p>조선인 위안부는 원하지 않은 곳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고 원하지 않은 성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군은 그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던 위안부와 일본군이 발견된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을 마치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이 채무자의 주장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를 심각히 왜곡하는 것입니다.</p> <p>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군인을 위로하려 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위로하려 갔다 면 훨씬 많은 순애보가 있었을 것입니다.</p> <p>채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일본군의 성욕해소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사랑을 했던 남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선인 위안부의 기본적인 역할 때문이라고 단정하여 적시하는 것은 위안부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p>	<p>사실—33—36</p> <p>위의 인용문은 위안부의 증언입니다. 모든 근거는 본서 안에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본적인 생각틀로 이 책을 오독하고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예외적인 일부 상황>이라고 단정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보는 일이 위안부의 비참성을 희석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그렇게 말하는 모습 자체가 자신들을 노예화한 국가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위안부들의 삶의 모습과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씩습니다. (본서 160쪽)</p> <p><조선인 위안부는 원하지 않은 곳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고, 원하지 않은 성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군은 그 직접적인 가해자>라는 인식을 부정하기는커녕, 일본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독해력의 문제입니다.</p> <p><자발적으로 군인을 위로하려 간 것>이든 아니든, 채무자는 그러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p> <p><훨씬 많은 순애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 나온 것만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만든 말입니다.</p> <p><성욕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 책에서는 부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강조했습니다(본문 219쪽)</p>
12		65쪽 17줄	<p>“(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장제 5」</p>	<p>일본군은 식민지 여성 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도 현지 여성을 강간하거나 위안소에 동원하여 성노예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p>	<p>사실—31—32</p> <p>채권자들은 이 책이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이들은 대부분 위안부의 슬픔을 더욱 잘 알게</p>

			<p>133쪽)라는 말에서처럼, <u>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u></p>	<p>채무자 박유하는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고 하면서 강간을 당한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겪은 반복적인 성노예 생활의 피해자성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중국인 여자를 강간하였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강간하지 않아 중국인 여자와 조선인 위안부는 다른 존재라는 주장을 하나</p> <p>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끌고 가 강제적인 성행위를 반복하였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가 저항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보면</p> <p>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하는 것은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의도적으로 약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p> <p>만약 강간을 당한 중국인 여성을 조선인 위안부처럼 일본군이 위안소에 구금하고 계속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면 그 중국인 여성은 죽음으로 저항하거나 조선인 위안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강간에 대하여 무기력해졌을 것이며 실제 일본군 점령지에서 점령지 여성으로 구성된 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p> <p>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중국인이나 강제, 기망에 의해 위안부가 된 조선인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일본군 전쟁범죄의 피해자입니다.</p>	<p>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복하지만 성노예적 생활을 부정하기는커녕, <몇 천 번이고 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는 군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쓰기는커녕, 오히려 강간한 내용의 자료를 상세히 인용하였습니다. (본문 143—146쪽)</p> <p><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중국인이나 강제, 기망에 의해 위안부가 된 조선인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일본군 전쟁범죄의 피해자입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 이 문제를 단순히 전쟁범죄로 간주한 채권자들의 인식일 뿐입니다. 그에 대해 조선인 위안부는 식민지 범죄로 보는 것이 채무자인 저의 시각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 할 것입니다.</p>
13	제 1부 — 제 2장 — 1.	67쪽 12줄	<p>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u></p>	<p>‘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p> <p>조선인 위안부들에게 위안부 생활은 절대 소중했을 기억이 될 수 없음에도</p>	<p>사실—33—36</p> <p>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지적인 관계>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위안부 생활 자체</p>

		<p>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p> <p>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뱉었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 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지나치게 미시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극히 특이한 일부의 사실을 전체인 양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대등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 사이에 채무자 박유하가 말하는 소위 사랑과 평화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p> <p>박유하의 주장처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 때문에 소위 사랑과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며 저항할 수 없는 위안부가 가해자인 일본군에 온전히 지배당하였기 때문에 강요된 평화가 유지되었을 뿐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은 곳에 끌려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끊임없이 강요당했던 여성들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동지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p> <p>그 피해자들에게 “위안부 생활을 했던 기간에도 즐거운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런 시간을 은폐하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강요했던 가해자들과 한 때 즐거웠었던 기억을 상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p> <p>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책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생의 즐거운 기억?을 상기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p> <p>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임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던 시절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였기</p>	<p>가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표현은 이 질문들이 위안부 자신이 아니라 주변인들, 그리고 대리인들의 의문임을 드러냅니다.</p> <p>군인들과 사이좋은 모습으로 찍은 과거의 사진들에 마음이 담겨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p> <p><강요된 평화>라는 것도 대리인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은 곳에 끌려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끊임없이 강요당했던 여성들임을 외면>했다는 것은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대리인들의 곡해입니다.</p> <p>위안부가 사진을 내버렸다는 것을 두고 <은폐>했다는 것은, 위안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던지를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은폐하라고 강요해온 이 사회의 무의식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입니다.</p> <p>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녀들이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버리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문제 삼을 것으로 여겨진 사회의 억압이다>라고 쓰고 있으니, 채무자의 비판이 위안부가 아니라 지원 단체 및 사회를 향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채권자의 지적—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을 생략한 지적이야말로 <왜곡>입니다.</p> <p>9월3일 기재출한 답변서에는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숨기려 했던 정황을 드러내는 또다른 증언들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년)</p> <p>패전 이후에도 군인과 함께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음에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의식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설사 현존위안부들이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다 해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런 증언을 한 다른 위안부에 대해 월권적인 행위일 것입니다.</p>
--	--	--	---	--

				때문에 사랑과 평화도 가능했다고 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즐거웠던 기억까지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	제 1부—제 3장—1.	98쪽 1줄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u>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u>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든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결과로 <u>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u>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위안부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적”의 관계에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더불어 일본 패전의 피해를 입은 것은 “준일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자신들의 조국명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머나 먼 제3국에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본여성이 일본에서 강제로, 혹은 기망에 의하여 위안소로 동원되고 성노예 생활을 하였다면 아무리 전쟁을 수행하던 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당국은 일본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준일본인으로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식민지 여성으로 철저히 성노예로 이용당한 희생자입니다. 일본군이 패전을 한 경우 현지에서 생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조선인 위안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지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며 현지에서 살 길이 없는 현지를 탈출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적으로 취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현지에 생활기반이 없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의 산물일 것이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하였을 때 현지에 머물 수 있던 현지 위안부들과는 달리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패퇴할	사실—57—60 이 글에서는 다른 나라의 위안부가 아니라 일반인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위안부들과 비교>하지 않은 문장을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고소장이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숙한 독해력을 드러냅니다. 현지인들이 <일본인>으로서 거주한 위안부들을 <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신의 토지를 점령했으니 <사실>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머나먼 제3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이도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으나 조선에도 군인이 주둔했으니 조선 땅에도 위안부는 있습니다. 일본땅에 위안부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유희남할머니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의 반발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지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조선 땅에서 배를 탄 위안부 중에는 <일본 여성>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모집에서 일본인 여성과의 차이를 굳이 보려는 것은 여성 인권을 말하면서 조선인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식이 드러나는 모순입니다. 거듭 말해 온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가 그동안 생각되어 오던 범주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술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명확히 보기 위한 학자적 탐구의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의 악독함만을 주장하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보고 그런 아이러니를 만든 것이 <일본제국>이었다는 인식이야말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무자의 생각입니다.

			<p><u>‘준일본인’</u>이기 때문이었다.</p> <p>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p> <p>실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u>‘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u>기도 한다.</p>	<p>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채무자는 마치 조선인 위안부가 준일본인으로서 일본군과 더불어 현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현지 위안부들과 다른 혜택을 받으면서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p> <p>조선인 위안부는 중국인 위안부나 동남아시아 다른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p>	
15	제 1 부 — 제 3 장 —	99쪽 5줄	<p>버마의 양곤(라곤)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p>	<p>채무자 박유하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일본군 성노예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범들이 있</p>	<p>사실—60—61 당시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국권이 없는 국가의 백성이었던 조선인 여성들은 <제국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식민</p>

	1.		<p>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u>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u>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 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p>	<p>는 곳으로 가게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쟁터를 벗어날 방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과 함께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p> <p>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지 위안부, 즉 조선인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에 대한 성노예 생활을 하였던 현지 위안부들도 조선인 위안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전범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성노예 생활을 한 현지 위안부들 역시 채무자의 논리라면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것에 다름없습니다.</p> <p>채무자 박유히는 전쟁범죄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지 백성으로서 위안부에 모집되었습니다. 국가의 전시 통치 체제에서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함께 다니며 군인을 <위안>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p> <p>본서에 언급한 수류탄을 나르고 총쏘기를 배우고 간호를 배우는 행위는 적극적 의지가 담겨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쟁 수행>행위입니다. 채무자는 그것이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썼습니다.</p>
16	제 2부 — 제 1장 — 2.	111 쪽 15 줄	<p><u>'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u>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p>	<p>채무자 박유히의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p> <p>채무자 박유히는 강제합방을 무효라고 하는 일반인의 상식과 달리 조선인들을 모두 일본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조선여인들이 일본인으로서 성의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그러하여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여성이라고 단정하고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위안부가 더 많은 것이 일본에 비해 가난한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p> <p>가난때문이 아니라 일본은 일본여성을 통해서 불법적인 위안소 유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여성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p>	<p>사실—64</p> <p>당시 한반도가 일제하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사실>로서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어 금지는 <일본인>이 되기를 요구받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현장에서도 <황국신민서사>를 외워야 했던 것 역시 그런 문맥 속에서의 일입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조선이 <한일합방>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인이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려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제국>의 통치술의 문제로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반발은 오래도록 <전쟁>의 틀로 이해하고 단순한 가해/피해의 틀로만 생각해 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을 통해서 불법적인 위안소를 경영할 수 없었다>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있었던 위안소가 많았다는 것은 위안부들의 증언집에서 드러납니다. 채권자와 그 주변인들은 오래도록 <물리적 강제성>이 있었던 것처럼 강조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방해해 왔</p>

17	제 2 부— 제 1 장— 2.	111 쪽 18 줄	<p><u>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u></p>	<p>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있어 강제성 여부이며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현실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강제력이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현실적인 강제력 행사 외에 기망, 유혹 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뒷받침하였다는 점입니다.</p> <p>일본정부와 일본군은 위안부를 동원하면서 일본 여성을 조선 여성에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다.</p> <p>하지만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위하여 매춘을 한 것이며 매춘을 통해 애국을 했던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는 서로 같은 상황이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습니다. 이제야 <물리적강제성에 의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만이 문제해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의 양상을 정확히 보려 하지 않았던 이런 자세야 말로, 20년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p> <p><구조적 강제성>이란 채무자인 본인이 이미 9년 전 책 <화해를 위해서>에서 지적한 개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든 개념을 사용해 채무자를 비난하는 아이러니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당시상황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살피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모순과 병폐를 낳았는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조선이 일본에 비해 가난한 여성들이 많았다>,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는 기술은 모두, <제국 일본의 문제>를 묻기 위한 기술입니다.</p> <p><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위안부를 동원하면서 일본 여성을 조선 여성에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그 증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p>
18	제 2 부— 제 1 장— 2.	112 쪽 15 줄	<p>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p>	<p>위 표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들이 강제나 기망, 허위 유혹 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저자는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결국 채무자의 시각이라면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의 전쟁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매춘여성과 동일합니다.</p> <p>채무자의 표현이 옳다고 하려면 일본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위안부 동원전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조선에서 위</p>	<p>사실—64—65</p> <p><전체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것은 채권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사회구조를 만든 일본에 가장 크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p> <p>본서의 120쪽에서 채무자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러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통치를 행했으며, 그 통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의 피해가 존재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배제하려 했다>는 기술은 이러한 문맥을 도외시키고</p>

19	제 2 부 — 제 1 장 — 2.	112 쪽 21 줄	<p><u>위안부 중에 조선인 여성이 많았던 것은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이다.</u></p>	<p>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나 위안부들이 많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동원이후부터 채권자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p>	<p>고 왜곡한 지적입니다. <조선에서 위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나 위안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규모적인 동원 이후부터 채권자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맞고 그 사실을 부정할 적은 없습니다. 해외로 <이동>한 위안부란 이동당한 군인을 위해 모집된 <국가에 의한 성 노동 동원>으로 보는 것이 채무자의 시각입니다. 채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인 위안부나 가난 때문에 떠난 이들과 조선인 위안부를 구별하려 합니다. 일반 매춘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위안부>가 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1970년의 서울신문에서도 <처음에는 화류계 여성들이 갔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시던 배춘희 할머니도 자신이 있던 집이 유곽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반 매춘과 위안부는 함께 <가난과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가 만듭니다. 거기에 <국가주의(본서 33쪽 10줄)>가 개입할 때 <위안부>가 만들어집니다.</p>
20	제 2 부 — 제 1 장 — 4.	120 쪽 19 줄	<p>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u>‘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u>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u></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의 행위가 매춘과 강간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p> <p>그러하여 강간적 매춘이나 매춘적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인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에 종사하여 매춘을 동반한 일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이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위안소에 감금되어 위안부 생활을 했던 동안 경험했던 바와는 다른 사실입니다.</p> <p>그러므로 채권자를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수입이 예상되는 매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채권자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끊임없이 “매춘”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p>	<p>사실—64—65</p> <p>위안부가 임노동이었음은 본서의 증언(본문 89—90쪽)이 말합니다. 또한 매춘에 대한 기술은 <매춘부>라고만 하는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을 향해 쓰여졌던 부분입니다. 즉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라고 말해온 이들을 향해 그것이 강간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즉, 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조직적 강간행위였음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그런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 자체에만 집착한 지적입니다. 위안소에서의 <감금>은 기본적으로는 업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위안소가 부대 안에 있을 경우에 자유 외출이 불가능했던 것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p>

			<u>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21	제 2부—제 1장—5.	121 쪽 16 줄	<p>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p>	<p>정확한 근거도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 박유하의 기술에 의하면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인 위안부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비참함과는 다른 상황으로 자신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기술은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으로 박유하가 반복하고 있는 “즐거운 기억”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위안부로서의 삶이 비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비참한 성노예 생활을 마치고 겨우 살아 돌아온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들의 실상과 경험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차별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참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p>	<p>주장—65</p> <p>채무자는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인 위안부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쓰지 않았습니다.</p> <p>거듭 말한 것처럼 <위안부의 비참성>은 채무자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권자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합니다.</p> <p>또한 위안부 생활은 다양해서 모두가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작고한 故 배춘희 할머니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 <위안부는 군인을 돌보는 존재였다>,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생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채권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억압해 왔기 때문입니다.</p>
22	제 2부—제 3장	130 쪽 17 줄	<p>(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군인과 즐기기 위하여 군인과 함께 아편을 사용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p> <p>이 표현 직전에 통증을 잊거나 없애는 방편으로 아편을 사용하였다는 증인이 있는 등 아편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증명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고찰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아편 사용의 실상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들의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성적 쾌감을 위하여 아편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위안부들의 일상을 왜곡시키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사실—(본서130쪽)</p> <p>당시의 만주에서 조선인들 중에 아편의 판매와 사용자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보입니다. 위안부의 아편 사용은 그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며, 진통을 위한 것이든 쾌락을 위한 것이든 고통스러운 생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한 사용도 있으나, <나도 한번 찢러보니 세상이 내 세상이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라는 말에 대해 <쾌감>이외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들의 이야기는 아편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권자(대리인)들의 일방적인 판단입니다.</p> <p>참고</p> <p><중국인, 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 번 찢러보니 세상이 내 세상이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략)></p>

					군인들이 몰래 몰래 찢어줬는데, 같이 아편으로 찢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찢어주고 자기들도 찢르고, 그렇게 했어요>—130쪽
23	제 2부—제 4장—1.	137쪽 3줄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u>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u>	‘위안부’를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라고 하여, 피해자인 ‘위안부’를 가해자와 동급의 지위로 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위안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위안부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가 일본의 승전을 지원하며 일본군과 함께 노력을 했고 그들의 성의 제공을 애국으로 본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을 착취당한 위안부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137—140 쪽) 인용된 문구에는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는 문장이 뒤따라 붙습니다. 다시 말해 군인들과 동지적인 관계라는 것은 <제국 일본>의 통치 구조 내에서 전쟁을 위해 동원된 집단으로서 군인과 위안부는 같은 목적에 복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서에서는 위안부가 가해자라는 서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의 오독에 따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당시 위안부들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 모집된 존재였으며, 전시에 간호부로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를 9월3일 제출한 답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4	제 2부—제 4장—1.	137쪽 6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u>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u> 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표현에서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조선인 위안부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안부를 자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위안부가 되었거나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된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로 옳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여 마치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고 책을 저술한 취지를	타인의 글의 인용—89 명백한 채권자의 악의적 편취 가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의 글을 비판을 위해 인용했을 뿐입니다. 바로 아래의 단락에서 채무자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본서 158쪽 13줄)> 채권자들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자발성의 의미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위안부의 체험은 같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인식대로라면 자신의 발로 간 경우는 어떤 처참한 생활을 했어도 위안부로서 옹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의 매춘차별
25	제 2부—제 5장—4.	158쪽 7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u> 든가 <u>“여성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u>	직전의 표현에서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조선인 위안부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안부를 자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위안부가 되었거나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된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로 옳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여 마치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고 책을 저술한 취지를	타인의 글의 인용—89 명백한 채권자의 악의적 편취 가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의 글을 비판을 위해 인용했을 뿐입니다. 바로 아래의 단락에서 채무자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본서 158쪽 13줄)> 채권자들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자발성의 의미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위안부의 체험은 같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인식대로라면 자신의 발로 간 경우는 어떤 처참한 생활을 했어도 위안부로서 옹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의 매춘차별

				<p>밝혔는데, 채무자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므로 일본에게 더 이상 법적책임 인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입니다.</p>	<p>의식이 만든 주장이라 하겠습니다.</p>
26	제 2 부 — 제 5 장 — 4.	160 쪽 10 줄	<p>오히려 <u>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u>로 보아야 한다.</p>	<p>조선인 위안부들을 애국처녀라고 묘사하여 성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들의 실상을 왜곡하고 동시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더불어 채무자는 원하지 않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성노예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병사들을 위로한 역할을 하였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p>	<p>사실/주장—89</p> <p>이 역시 <매춘부>라 폄훼하는 일본의 우파들을 향해, 그렇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한 대목입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 <애국 처녀>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은, 일본에 대한 비판일진대, 이 서술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대목 직후에 <그녀들이 일본이 식민지배구속에서 병사들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한 이상 그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p>
27	제 2 부 — 제 5 장 — 4.	160 쪽 18 줄	<p>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u>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u>로서, <u>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u>뿐이었을 수 있다“.</p>	<p>채무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진 일본군을 위해 최선을 다한 민간인 여자로서 가진 긍지에 의하여 성노예 생활을 견뎠을 것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심정과 실상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는 원하지 않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성 노예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병사들을 위로한 역할을 하였다>고 썼다고 하지만, 그 직후에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였을 뿐이다>(160쪽)라고 썼습니다.</p> <p>정작 그렇게 말한 일본의 우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판을 시도한 채무자의 글을 명예훼손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기술의 의미는 일본의 통치 체제에 의한 주입 그리고 통치 체제라는 거대한 구조 앞에서의 체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 무력한 개인을 설명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정도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말했을 뿐입니다.</p>
28	제 3 부 — 제 1 장 — 6	190 쪽 5 줄	<p>한 개인으로서 위안부의 또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 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u>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u></p>	<p>조선인 위안부들이 느끼고 판단한 것과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과거 성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애국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p>	<p>사실—본서65—68 연애한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들 혹은 주변인들이 다른 위안부의 경험을 억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본서의 집필취지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는 <“연애”나 “애국”의 기억은 성</p>

			<p><u>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 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u></p> <p>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p>	<p>그럼에도 채무자는 위안부들이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단정하면서 위와 같은 기억이 은폐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p> <p>채권자들은 자신들을 15세 소녀 피해자이거나 투사 할머니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기억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 박유하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연애”나 “애국”의 기억은 성노예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거나 그런 기억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위안부 생활을 대표하는 기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p>채무자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기억이 수동적으로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타의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p>	<p>노예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거나 그런 기억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위안부 생활을 대표하는 기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위안부의 본질>을 연애나 애국이라고 한 바 없습니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보이는 사실을 모두 일단 보고 일본우익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재의미화를 시도하였을 뿐입니다.</p> <p><위안부 생활을 대표하는 기억>이라고 한 바 없으며, 위안부의 본질은 비참한 것임을 충분히 기술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지적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피해를 축소시키고 일본을 면죄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어판이 나온 이후의 일본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합니다.</p>
29	제 3부 — 제 1장 — 6.	191 쪽 8 줄	<p>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u>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u>이다.</p> <p>또 <u>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u></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가장 상층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p> <p>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은 국제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었고 <u>일본 형법으로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 박유하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u>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p> <p>채무자의 주장대로 위안부 동원이 아무런 법적 위배가 없는 것이었다면 일본내에서 일본 여성을 동원을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에게</p>	<p>사실/주장—102—106</p> <p><위안부 동원의 가장 상층에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한 바 없습니다. 본서는 일본의 책임을 묻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연행>을 부정하던 일본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반응들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형법으로 범죄>라는 것은 지원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자료로 채무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은 이 고소자체의 정당성자체가 의문시되는 일입니다.</p> <p>지원 단체들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온 근거는 <강제 연행>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 연행이 중심이 아닌</p>

			<p><u>상</u>(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u>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u></p> <p>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u>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u>로 물을 수밖에 없다.</p>	<p>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업자와 군인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바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1차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의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표현은 소위 일본 우익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며 주장하고 있던 것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p>	<p>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인신매매나 유괴를 일본군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 연행이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양심적인 신문을 대표하는 아사히신문이 2014년 8월, 강제연행 기사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공식 방침은 그러한 사기나 유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는 당시에 유괴범들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괴범들이 직업소개소에 팔고, 이를 통해 위안소로 가게 된 경우는 다음 자료의 첫 행에도 나옵니다. 또한 군은 위안부와 업자들 간의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폭행 등도 금했습니다. 따라서 군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업자와 군인 개인의 책임>을 묻은 것은 <국가 책임>을 묻는 현재의 논리가 중간 단계에서의 책임자들을 면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가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누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및 폭행 등에 대한 금지 지시 관련 자료를 9월3일의 답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 <전시 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년)</p>
30	제 3부 — 제 3장 — 1	205 쪽 16 줄	<p>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u>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가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하였다고 하여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하였던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과 전혀 다른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사실/주장— 배춘희할머니의 녹취제출</p> <p><국가를 위한 동원>과 <사기 진작>은, 기존 연구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p>
31	제 3부 — 제 3장 —	206 쪽 8 줄	<p>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주중략...단지 성</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에 협력한 기억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들이 성노예로 성을 착</p>	<p>사실—83—</p> <p>위안부가 일본군에게 협력을 요구당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서와 9월3일답변서에 제시한 각종 자료에 나타</p>

	1		<p>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p> <p>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중략...</p> <p>그러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u>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p>	<p>취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p> <p>동시에 조선인 위안부 중 돌아오지 못한 분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 협력을 한 사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에 대한 자발적인 부역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실상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선인 위안부들의 처한 상황과 고통에 가슴아파할 것이지 위안부들이 일본군들에게 협력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일본 옷을 입거나 일본이름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랐음이 드러납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채권자를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가 위안부가 대부분 <학살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p> <p>그것을 두고 <조선인 위안부들의 처한 상황과 고통에 가슴 아파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의/도덕의 독점행위입니다.</p> <p><일본 옷을 입거나 일본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쓴 적이 없고, <자발적인 부역자 취급>을 한 적도 없습니다. 협력을 강요당했다고 썼을 뿐입니다.</p>
32	제 3 부 — 제 3 장 — 1.	207 쪽 10 줄	<p><u>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u>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p>	<p>조선인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군의 동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를 유린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바 채무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실질적 강간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이러한 일</p>	<p>사실—107—110</p> <p>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음은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성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를 유린당한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p> <p>노예이면서 동지였다는 서술은 <식민국 백성으로서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통치 구조에 병합되어 군인과 함께 전쟁에 동원된 백성>으로서의 동지였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존서평들이 울</p>

				<p>본군의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부정하면서 강제적 성의 제공을 위안부들의 협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는 홀로코스트와 조선인 위안부를 비교하면서 피해자이면서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가 홀로코스트에는 없다는 황당한 기술을 하고 있는 바</p> <p>채무자의 시각이라면 유대인들은 독일군에 붙잡혀 극렬히 저항하지 않고 복종을 하며 가스실에서 처형당해 제국주의 독일의 침략전쟁에 소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라고 표현하며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협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협력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덧씌워 위안부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의 시각이라면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인 강간범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고 그에게 정신적 위로를 제공했던 ‘동지’이자 ‘협력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식부재이며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p>	<p>바르게 이해한 이런 부분을 채권자와 대리인들이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식민지라는 모순을 보지 않으려는 맹목의 결과입니다.</p> <p>채무자는 <일본군의 강간 행위를 계속하여 부정>하긴 커녕, 강조했습니다.(본문 147—148쪽)</p> <p>홀로코스트는 일방적 민족 말살이므로 위안부문제와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대부분이 <나치> 혹은 <독일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강요당했다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식민지문제와 다른 점입니다.</p> <p>9월3일답변서에 이처럼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위안부들이 감내했던 모순된 삶의 비극과 그러한 기억들을 되살리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제시했습니다.(자료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p>
33	제 3부—제 3장—1.	208쪽 1줄	<p><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p>		
34	제 3부—제 3장—1.	215쪽 21줄	<p>그러나 <u>일본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 도 사죄를 제안</u>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u>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u></p>	<p>채무자는 향후에도 일본의 국회입법을 통한 해결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일본의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가 말하는 국가폭력은 혐의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군인의 직접적인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그러나 위안부 대다수는 강제력에 의하거나 사기로 인한 기망에 의하여 위안소에 끌려갔으며 끌려가서는 공통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이후부터는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p>	<p>사실/주장—본서167—191, 기제출 아사히신문자료. 한구위안소자료</p> <p><일본의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것은 물리적 <강제 연행>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양심적으로 보도해 온 아사히신문도 본서의 발간에서 1년 지난 2014년 8월, 강제 연행 기사를 취소했습니다. 조선 반도의 경우, 위안부에 대한 <강제력>의 주체는 업자였고 강제성은 구조적인 문제일 뿐입니다.</p> <p><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유지는 국가 폭력의 극명한 예>를 채무자가 <부정한다>고 간주하는 채권자의 의식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적> 책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p>

			<p><u>이 없다</u>는 점, 있다고 한다면 <u>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u>이어서 <u>개인의 범죄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u></p>	<p>그러므로 조선인 위안부들은 끌려가는 동안이나, 위안소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인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p> <p>조선인 위안부 동원 방침과 위안소 설치가 일본군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므로 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유지는 국가폭력의 극명한 예이며 이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가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고 단정하여 국가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 채권자들은 그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폭력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박유하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채권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입니다.</p> <p>하지만 20수년전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하여 <강제연행>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때의 주장— <불법>을 저질렀으니 <법적 책임을 지라>는—이 이후 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사실등 새로운 연구가 다수 나왔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바꾸는 것은 일본의 책임을 회색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채권자와 주변인, 일부 연구자, 대리인들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p>
35	제 3부 — 제 2장 — 2	218 쪽 10 줄	<p>그것은 위안부를 필요로 한 군이 위안부 모집을 조선이나 대만 총독부 등에 부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략.. <u>사기나 속임수를 써가며 모집하는 일까지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u></p> <p>군의 수요를 알게 된 업자들이 사기나 속임수까지 써서 모집했던 것이 대부분</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속임수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p> <p>그러나 일본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본질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조장하고 이를 장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속임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이러한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지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p> <p>업주나 포주가 자발적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하여 먼저 조직적으로 군위안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진 이상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p>	<p>주장—분서 76,필요시 한구위안소</p> <p><이러한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지하지 않은 책임>은 채무자인 본인도 묻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으로 물었을 뿐이고 이는 저의 판단에 의거한 것이므로 원고 측과 판단이 다르다 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업주나 포주가 자발적으로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우의 예를 분서에 적어 두었습니다.</p> <p><독려>란 마치 일본군이 인신매매를 독려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p> <p><위안소에서 이루어진 최초 강간>이라는 표현에는 모든 위안부가 강간을 당했다는 전제가 있지만 증언들은 오히려 이송도중에 업자에 의한 강간이 많아 보입니다. 어느쪽이든 채무자는 일본을 향해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p>

			<p>분이었고 일본군은 그런 상황을 묵인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속했다.</p> <p>그리고 단속한 이상 단속쪽이 일본군의 인신 매매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일 수 밖에 없다.</p> <p>위안부들이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일본군이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일본군에게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한 위안소 이용이 국가범죄가 될 수는 없다.</p>	<p>입니다.</p> <p>마치 들키지 말고 도둑질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관련하여 들킨 사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독려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주장입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들의 진술은 강제 혹은 기망으로 위안소에 끌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강간의 대부분은 일본 군인이었습니다.</p> <p>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사기 모집을 단속하였으므로 법적책임이 없35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안소에서 이루어진 최초 강간이 거의 일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p>	
36	제 3 부 — 제 3 장 — 2.	219 쪽 16 줄	<p>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은 전리품이었다.</p>	<p>점령지의 피해 여성을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는 방식도 문제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p> <p>더불어 채무자 박유하는 반복하여 조선인 위안부와 점령지 여성들을 구별하고 있는 바 조선인 위안부나 점령지 여성들이나 본질적으로 일본군의 성적 요구 해소에 희생당한 사람들임을 고려해볼 때 타당하지 않는 구별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군수품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인 위안부들이 침략전쟁에 도움을 준 협력자</p>	<p>주장—112—114 한구 위안소</p> <p>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설명함으로써,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으며 반인권적이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는 근대 이후의 국가 체제에서 여성을 주체적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 본위주의에 의해 폄박받고 수탈당한 여성의 문제로서도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품>이란 채무자가 아니라 '제국 일본'이 위안부들을 <물건 취급>하였음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성노예>였음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오로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물건화>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p>

				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다. 조선인 여성을 군수품 취급했던 것은 이동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국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라는 점을 위안부 할머니 스스로 인식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나라를 위해>나가야 했고, <같은 일본사람 취급>을 했다고 분명히 말한 자료를 9월 3일 제출서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7	제 3부—제 4장—1.	246 쪽 7 줄	1996년 시점에 <u>‘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u>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조선인 위안부들을 근본적으로 매춘을 한 여성으로 치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본서84 기제출자료<매춘>부분 임노동이었다는 점은, 9월3일에 제출한 1992년의 정부 보고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가 국가에 의해 관리된 매춘 행위였음은 본서에 쓴 것처럼 유엔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38	제 3부—4장—1.	247 쪽 14 줄	그러나 당시 <u>위법사항이 인신매매뿐이던 이상 위안소 설치와 이용을 “일본국의 범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u> 일본군이 한 일을 범죄시 하려면 오히려 개인적인 강간이나 폭행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인신매매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강제력 행사를 통해 위안부를 동원하고 동원한 위안부를 계속 위안소에 감금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것은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채무자는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위안소로 가는 과정 또는 위안소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계속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한 위안부들의 실정을 외면하고 위법사항이 인신매매뿐이라고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모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동원과 성착취는 일본국의 범죄이지 결코 개인의 범죄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성노예 생활에 대하여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위안소 설치와 이용을 일본국의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하	사실/주장—본서76 <감금>(무임금)<성 노예 강요>에 관한 인식이 다른 이상,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위안부들의 실정을 외면>한 바 도 없습니다. <일본국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9	제 3 부— 제 4 장— 5	254 쪽 23줄	게다가 동원이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이 알고도 지시한 것이 아닌 한 설사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u>그 목인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제연행이나 인신매매의 주체를 일본군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u>	일본군은 위안부 동원의 적극 가담자이며 지시자입니다. 위안소에 도착한 조선 여인들에 대한 강간 주체는 대부분 군인입니다. 위안부 동원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방침과 조직적 실행입니다. 단순히 인신매매 목인이 아니라 강간의 주체인 일본군의 행위가 명백함에도 그 책임에서 일본군을 제외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적 책임의 주체 역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지 하수인에 불과한 업주나 포주가 법적 책임의 유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주장—본서 76, 한구위안소 <위안소에 도착한 조선 여인들에 대한 강간>이란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말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월에 제출한 영화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조선인 학도병이 제작한 영화이므로 왜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해온 것처럼 채무자는 <그 책임에서 일본군을 제외>한 바 없습니다. <법적 책임의 주체 역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도의적 책임의 주체가 일본군이라고 말한 채무자의 의견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40	제 3 부— 제 5 장— 2.	265 쪽 2 줄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 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피해자를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동지’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동지—120 반복하지만 이러한 역설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피해가 어떠한 형태를 띤 삶이었던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이고 불가피하게 불완전한 ‘식민지인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41	제 3 부— 제 5 장— 2.	265 쪽 19 줄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 이면서, <u>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u> 이었다.	채무자는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 군인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동지적 존재라고 반복하여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42	제 3 부— 제 5 장— 2	272 쪽 22 줄	한국의 위안부들이 기금을 위로금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한 이유는 <u>과거에 받았던 차별 경험과 기억 때문</u> 이다. 식민지의 위안부들은 자신들	채무자는 진상규명을 정확히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기금을 받지 않은 것이 차별 경험과 기억 때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법적인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	주장 <차별 경험과 기억 때문>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말하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받아들인 기금을 <동정금>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 과거에 식민지였던 경험에 따른 자존심임은 채무자의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본서 187—191쪽 에 쓴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1965년의 협약

			<p>이 그 곳에 있게 된 이유가 <u>가난한 여성이 었기 때문이었</u>고 <u>그 가난이 피지배민족이 라는 계급성이 만드는 것</u>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p> <p>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욕당하는 일을 경계했고 그 결과로 반발과 저항이 강했던 것이다.</p>	<p>하지 않았고 애매한 성격의 기금으로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반발한 것입니다.</p> <p>그런데도 채무자는 마치 열등의식 때문에 채권자들이 기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때문입니다. 이는 본서에 쓴 바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기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여성 지도자들이 받지 못하게 했다.> 는 말로 부산 정대협김문숙 회장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p>
43	제 4 부 — 제 2 장 — 1.	291 쪽 6 줄	<p><u>‘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u>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p>	<p>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일본국가적 차원에서 성노예로 동원한 것이 본질임에도</p> <p>채무자 박유하는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일본 공창제도에 조선인 위안부를 계속 포섭하고 있습니다.</p> <p>그리하여 시종일관 조선인 위안부를 매춘을 한 영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인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p>	<p>주장—123—128 이는 원고 측도 쓴 바 있습니다. <공창>을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장소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창의 의미는 국가가 허용한 매춘장소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자발적으로 온 이도 있고, 속아서 온 이도 있습니다. 일본의 공창이 근대 이후 이식된 조선의 위안소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말해 왔습니다. 위안소는 전쟁을 위한 국민 동원의 형태로 점령국인 일본이 국가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런 동원은 <무상>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무상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구조를 이용한 것은 업자나 포주입니다. 다만 근로정신대도 위안부도 <국가에 대한 애국>이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놓고 이루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물리적 강제성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일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희생>임을 부정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p> <p>이 자료에서는 가난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나섰고 계약에 응했다는 사실, 위안소에 따라 착취도가 달랐던</p>

					사실, 그리고 국가적 체제 내에서 체념해 버린 개인의 무력함과 그 안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때로는 위안부 생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곤 했던 업자와 위안부들의 모습이 엇보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비극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일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업은 꼭 막힌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44	제 4부—제 2장—1.	294 쪽 5 줄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 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남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채무자 박유하는 일본 가라유키상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하면서 가라유키상의 역할을 실시한 후 조선인 위안부가 가라유키상과 마찬가지로 일본 침략전쟁의 협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생활을 하며 일본 군대에 수동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마치 자발적인 협력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제국의 위안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동지이자 협력자로 규정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침략전쟁 수행자와 동일시하여 일본군 전쟁 수행의 큰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장—129—131 조선인 위안부가 식민국 백성으로서 점령국의 전쟁에 동원된 것은 분명 점령국의 논리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해자인 일본과 <동일시>된다는 채권자의 지적은, 개인의 삶과 국가적 이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채권자의 사고를 보여줍니다. 개인은 국가라는 큰 틀 속의 존재이기에 국가적 강제라는 틀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일면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강제의 틀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개인의 모습은 각양각색이기에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개인은 각자 도생하고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채권자의 지적은 이러한 구조적 주체와 개별 주체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본소 291쪽에서 294쪽에 이르는 이 부분들은 점령국 일본의 통치하에 위안부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45	제 4부—제 2장—1.	294 쪽 16 줄	그녀들이 ‘남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u>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채무자는 제국의 위안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동지이자 협력자로 규정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침략전쟁 수행자와 동일시하여 일본군 전쟁 수행의 큰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식민지 시대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식민시대를 견뎌온 모든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가 됩니다.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식민 시대를 견뎌온 모든 조선인>과 전쟁터에 나간 위안부는 다릅니다. 그들은 삶든 죽든 그러한 위치에 떠밀려졌던 것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전시 일본의 점령지 주둔군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주도적으로 위안소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당시 위안부들이 국가적 관리 하에 놓여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정책”이라는 형식 속에서 위안부들이 “제국의 세력 확장”에 복무했던 위치에 놓여있었다는 것은, 삶든 죽든 <사실>입니다.
46	제 4부—제 2장—1.	294 쪽 22 줄	<u>‘조선인 위반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채무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식민지 시대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식민시대를 견뎌온 모든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가 됩니다.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식민 시대를 견뎌온 모든 조선인>과 전쟁터에 나간 위안부는 다릅니다. 그들은 삶든 죽든 그러한 위치에 떠밀려졌던 것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전시 일본의 점령지 주둔군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주도적으로 위안소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당시 위안부들이 국가적 관리 하에 놓여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정책”이라는 형식 속에서 위안부들이 “제국의 세력 확장”에 복무했던 위치에 놓여있었다는 것은, 삶든 죽든 <사실>입니다.
47	제 4	296	그리고 <u>‘자발</u>	채무자의 주장처럼 자발적으로 간 매	사실—자발/매춘123—128

부 제 2 장 1.	쪽 19 줄	<p><u>적으로 간 매춘부</u>라는 <u>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u>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p> <p>이는 가해자이면서도 여전히 가해 사실을 부정하며 반성과 사과를 꺼리고 있는 현재의 일본정부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석되지 않습니다.</p> <p>그럼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에 덧씌우고 있습니다.</p> <p>채무자 박유하의 주장대로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발적 매춘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p>	<p>채무자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p>채무자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p> <p>이해가 가해자이면서도 여전히 가해 사실을 부정하며 반성과 사과를 꺼리고 있는 현재의 일본정부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석되지 않습니다.</p> <p>그럼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에 덧씌우고 있습니다.</p> <p>채무자 박유하의 주장대로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발적 매춘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p>	<p>채권자는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다고 해 놓고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언은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p> <p>그럼에도 채무자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이든 아니든 그러한 구조 속에 놓이도록 만든 것 자체를 일본의 책임으로 환기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p> <p><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더불어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군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은 전혀 희석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순입니다.</p> <p>채무자의 시도가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에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서를 정확하게 읽은 기존의 서평이나 기사가 말해 줍니다.</p> <p>더구나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은 자발적 매춘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채권자와 주변인들이 인정한 채권자가 말합니다.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하던 시절의 이미지—12살짜리 소녀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이미지에 지원 단체는 2014년 현재 까지도 기대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평균 나이는 25세라는 보고서가 있고 설사 20세라 하더라도, 현재의 십대 전반의 소녀 이미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녀를 팔아넘긴 주체가 부모이거나 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본서의 도처에 기술하였습니다.</p>
48	제 4 부 1	298 쪽 5	<p>문제는 <u>네덜란드 여성과 ‘조</u></p> <p>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과 동일시 하</p>	<p><u>사실—136—137</u></p> <p>당시 <국가>라는 틀 속에서 조선인 위안</p>

	제 2 장 — 1.	줄	<u>선인 위안부</u> <u>역시 '적'의 관</u> <u>계였다는 점</u> <u>이다.</u>	여 일본군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던 네델란드 여성 피해자의 <u>적</u> 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호도로 피해자인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부와 네덜란드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지적한 대목입니다. 일본이 침략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그에 따라 네덜란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를 일본군은 <강제 매춘>시켰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일본인>이었던 <조선인 위안부>가 <적>일 수밖에 없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49	제 4 부 — 제 2 장 — 2.	306 쪽 10 줄	중국이나 네델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u> <u>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u>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나 네델란드 등 다른 나라 여성들이 입은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로 동일함에도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와 다른 나라 여성들을 구별하고 심지어 조선인 위안부가 <u>'완벽한 피해'</u> 의 기억을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까지 벗겨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건립에 대해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다는 표현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 현재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피해를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을 벗어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일본군 피해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지 협력의 기억을 벗겨내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143—147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까지 벗겨냈다>는 것은 위안부가 아니라 지원 단체체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위안부를 비판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이미지는 실제 대다수의 위안부를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순결주의적 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정대협은 남성 본위적 시각>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덧씌우고,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사람들>로 한 것은 오히려 지원 단체라 해야 할 것입니다.
50	제 4 부 — 제 2 장 — 3.	310 쪽 3 줄	정대협은 '아시아'의 '위안소'가 똑같이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곳으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u>조선인 여성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다...</u>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전쟁범죄의 가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침략자 국민들에게 적국의 여성으로 보였다면 이 역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침략 전쟁의 피해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50)사실—146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음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은 현지 여성에게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대체 일본인>이 되어 피해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부여된 <일본인>의 지위에 안주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 현지인을 차별했음을 볼 수 있는 자료를 9월3일답변서에 제시했습니다. (51)사실—본서36 <나한테 오는 민간인들은 대개 대만사람이었다....일본사람보다 검고 냄새도 나니까 대만사람인 줄 알았다. 옷은 보통민

			<u>태평양전쟁 때의 조선인이란 ‘일본인’이고 자국을 침략한 적국의 여성일 뿐이었다.</u>		간인이었다, 추잡했다> 150—151, 자료에서 보듯 위안부들은 “전쟁에 동원된 일본인”으로서 현지에 있었습니다.일본 군인들도 위안부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있었음을 <일본 사람이 외국 나라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려고>하는 걸 모르고 현지사람에게 심하게 대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선인 위안부가 침략자 국민들에게 적국의 여성으로 보였다면, 이 역시 일본군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침략 전쟁의 피해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본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순>자체를 일본의 책임으로 말한 것입니다. (52)—사실 기림이란, <기억하는 일>입니다. 소녀상이 그런 <기림>을 위한 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51	제 4부 — 제 2장 — 3.	310 쪽 16 줄	조선부 위안부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u>냄새난다는 이유로 대만인을 싫어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u>	막연한 추측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여성을 차별하는 가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52	제 4부 — 제 2장 — 3.	310 쪽 22 줄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u>‘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u>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이 전부이지 기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들의 존재에 대해 왜곡을 하고 있으며 조선인 위안부의 가해자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3	제 4부 — 제 2장 — 3.	311 쪽 4 줄	한국의 욕망이 투영된 ‘피해자이자 투사’로서의 ‘민족의 딸’을 보는 일은 <u>우리가 아시아에서 ‘적의 여자’이기도 했던 일을 잊는 일이기도 하다.</u>	조선인 위안부인 피해자를 전쟁 범죄 가해자이자 아시아의 적의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군에게 강간당하고 위안소 생활을 했던 현지인 여성들 역시 “적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포함한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에 대하여 심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장 <적의 여자>란 그들에게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략자와 같이 들어와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한,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